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12940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승휘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678,695원 및 그 중 173,798,158원에 대하여 202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80,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S560 4matic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격 202,400,000원, 월 상환금액 3,908,950원, 약정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름 및 날인이 되어 있고(보증채무최고액 280,700,000원), 첨부서류로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2019. 10. 1. 피고 본인 발급), 주민등록 등본(2019. 10. 1. 피고 본인 발급)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후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21. 7. 5. 현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173,798,158원, 이자 12,424,840원, 연체료 12,455,697원 등 합계 198,678,69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서 중 연대보증 부분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본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는 F 등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는 F 등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전화 통화 등을 통해 F 등이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고, ④ 피고는 F 등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였을 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고, 원고 상담직원과 통화를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F가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관련 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 명의로 기명,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책임 근거에 관한 원고 주장들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핀다.

(1) 피고의 연대보증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된 피고 인영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서 용지 중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원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에 대한 위 유죄 취지의 판결은 그 후에도 유지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F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 부분이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가 F 등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F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인 법인카드 발급, 리스차량 계약 등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F 등에게 피고의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가 연대보증용 위임장, 보증서 등과 같이 피고가 F 등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가 F 등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전화 통화 등을 통해 F 등이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사 F 등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가 아닌 F 등에 의해 임의로 위조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법인과 리스계약 및 그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은 그 법인의 대표자 본인과 직접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9. 10. 2.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법인등기부상 피고가 유일한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자동차 리스계약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본인과 직접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F 등과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피고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의사로 연대보증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G에 대한 H감정축삭결과에 의하면 원고 상담직원의 각 통화녹음(갑 제10호증)에 나타난 음성은 피고의 음성이 아니라 제3자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 상담직원이 통화 상대방이 피고 본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가사 F 등이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F 등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가 F 등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할 것을 허락한 경우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지 내지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는 바램에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니므로 상법 제24조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법 제24조를 근거로 펼치는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